

의안번호	2214270
의 퇴 인	곽상언 의원
회 답 일	2026. 1. 12.
추 계 번호	25A600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	의무규정
2	안 제43조제2항 신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4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②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③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²⁾ 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의무규정
3	안 제47조제2항 신설 (위증죄)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4제5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4	안 제49조의2제1항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 1) 안 제3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72호) 제128조의3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에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소송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해당 규정은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52조제1항 신설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의무규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3972호)

제128조의3(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신청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의4(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제128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법·장소 및 변호사 선임여부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신문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경과 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상녹화물(녹음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경과 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⑨ 당사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제128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제1항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8조의5(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제128조의4제1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8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등’은 ‘전문가’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 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⑥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5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 할 사람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혹은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
- ⑨ 제8항의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인이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128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⑫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기간·비용,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제128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률자문서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법률자문서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128조의6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3조제2항 신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3	안 제47조제2항 신설 (위증죄)	
4	안 제49조의2제1항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5	안 제52조제1항 신설 (과태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72호, 이하 의안번호 생략)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 신문 및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도입하고, 해당 내용에 수반하여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
-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의 증가는** 당사자 간 신문 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영상녹화를 하는 데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장비 구입비와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
 - 개정안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조의4에 따라 당사자 간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녹음 및 영상녹화가 가능한 변론준비실과 해당 절차의 실무를 운영할 법원사무관 등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무원 인건비와 함께 변론준비실 내 영상녹화 시설 장비 등의 구입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조의6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음³⁾
- **재정수입의 증가는** 거짓 진술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전문가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 등으로 인해 발생
 - 안 제47조 및 제49조의2는 벌금, 제52조는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증가 요인

구분	내용
재정지출 증가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조의4제1항·제3항·제6항) 당사자에 의한 신문: 법원 공무원 인건비, 영상녹화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장비 구입비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조의6)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기술심리관·조사관 인건비
재정수입 (세외수입) 증가	· (제43조제2항)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 몰수 및 가액 추정⁴⁾ · (제47조 및 제49조의2) 위증죄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 (제52조제1항)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조의6제14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전문가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인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을 전문가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공무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증거조사를 하는 전문가가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으로 지정될 때 발생할 공무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봄

4) 「형법」 제134조(몰수, 추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신문과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에 따른 법원별 필요 인력 및 장비,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건수 및 액수 등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지출 증가액의 경우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별⁵⁾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증원 수요와 영상녹화시스템 등 장비 수요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조의4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운영하면 해당 절차의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경우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공증인 등) 수수료, 일당 및 여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영상녹화 및 진술경과 요약 등을 명할 사람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비용추계를 위하여 당사자 간 신문절차상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개정안에서 해당 법원공무원의 직급을 한정하지 않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규정하여 해당 직무를 담당할 법원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영상녹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비 구입비의 경우 기존 장비를 고려한 법원별 컴퓨터 및 영상녹화시설 등 장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조의6에 따라 법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면 해당 전문가의 자격이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인 경우 공무원 인건비가

5)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특허법원의 7개 법원에서 관할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② 특허권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지정할 전문가(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비용추계를 위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전문가의 자격을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으로 한정하더라도, 각 법원별로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과 신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의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수입 증가액**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의 건수와 1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당사자 상호간 신문 제도와 전문가 사실조사를 도입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과,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신설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을 차감한 추가재정소요(순 재정부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